논 단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방향

김 수 근
아주대학교 교수

1. 서 론

금년도 예산에서 중앙부처 확정기준의 국고보조금 총액은 10조 3,494억원으로 지방재정 일반회계 예산규모 49조 564억원 대비로는 21.1%, 순계 총예산규모 64조 4,892억원 대비로는 16%에 이르는 비중이 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관련 총경비는 16조 7,848억원으로 순계 총예산규모 대비 26%에 이르는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서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상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위임하거나 국가가 권장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범위를 지정하여 그들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해석되고 있다.

2001년도 예산에 포함된 국고보조금은 20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총 362개 사업에 대한 10조 3,494억원이며 2000년도의 351개 사업 8조 2,531억원에 비해 25.4%가 증액된 규모이다. 최근의 연도별 변동추이는 2000년도에는 예외적으로 대전년비 15.8%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세는 년간 19%를 나타내고 있다. 주관 부처별로 보면 총보조금의 36.1%를 차지하는 3조 7,337억원을 보건복지부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교통부가 23.9%인 2조 4,743억원, 농림부가 14.3%인 1조 5,352억원으로 이들 3개부처가 전체의 4분지 3에 해당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2001년도 총 국고보조사업 362개 중 순수 중앙정부 사업으로 규정될 수 있는 여권발급, 전국체전 운영, 국유재산관리 등은 전체의 26.5%인 96개 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시책을 지방에 수행하게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2002 월드컵 경기장 건설, 경지정리, 토양개량,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사업은 49.4%인 179개 사업으로 이들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이해를 가진 사업으로 규정될 수 있는 지방공사의료원 지원,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쓰레기 소각시설, 공공도서관 건립 등 사업은 24.1%인 87개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1/4을 넘는 방대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이 국고보조금 관련 경비의 운영내용이나 제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관련 중앙부처측에서나 실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측에서 여러 측면에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제도개혁의 방향과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란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 방향으로 중앙부처측에서는 기존사업의 추진은 효율화하면서 중앙재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의 초점을 모으고 있으며, 지방측에서는 실제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혁을 제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개혁방향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재규명을 통한 지방고유사업으로의 이양, 지나치게 세분되고 영세규모인 일부사업의 통폐합, 현행 국고보조율의 일괄 인하 또는 일부 재조정 가능성과 관련된 논란의 해결방향, 차등보조율의 도입과 활성화방향, 실질적인 신청주의의 정착화를 포함하는 국고보조금제도의 사전 및 사후 관리체제의 개혁방향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2.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1) 국고보조사업 성격의 명확화와 지방이양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은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사무성격 재규명과 그 결과에 따른 일부사업의 지방고유사무로의 이양 가능성 검토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행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 고유사무이면서 지방에 위임된 사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지방고유사무이지만 중앙정부가 정책상 권장 또는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 이해관계의 강도 또는 관심도 정도에 따라 그 국고보조율이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공통적인 사무의 경우 사무성격의 재규명이 필요하며 지방자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의 원칙 설정기준에 따라 지방고유사무로의 이양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기준보조율이 50% 미만으로 지정된 사업은 일단 중앙·지방간 기능의 재정립을 통해 지방고유사업으로의 이양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지방고유사업으로 이양되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분은 전액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의 방법으로 지방의 일반재원 형태로 그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2) 영세 국고보조금 사업의 통폐합

국고보조사업의 지나친 세분화와 영세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비효율성과 폐단은 계속 지적되어 온 사항이며 그 동안 영세규모 사업의 통폐합 노력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아직 상당수의 영세규모 사업이 잔존하고 있다. 영세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에 비해 보조금신청, 교부결정, 예산계상, 정산 등 관련 간접비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대한 관할 중앙부처의 간섭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적 자치행정체계의 정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조사업중에 총보조사업규모가 3억 미만인 영세사업의 사례를 살펴 보면, 199백만원 규모의 구조 및 응급처리교육사업, 292백만원 규모의 가족계획시술사업, 237백만원 규모의 야생조수관리사업, 240백만원 규모의 치어방류지원사업, 131백만원 규모의 산성우 피해조사사업, 100백만원 규모의 전국유적지표사업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들 영세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성격의 재규명에 따라 타 보조사업과의 통폐합 가능성, 포괄보조금 형태로의 통합가능성, 지방고유사업으로의 전환과 해당재원의 일반재원적 지방재원화 등의 여러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국고보조율의 재조정 문제

국고보조사업의 지정과 사업별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율은 지방자치법 제114조 제2항에서 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예산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국고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보조금의 종류를 정율보조사업, 정액보조사업, 기타보조사업으로 구분하여 2001년 기준으로 총 362개 국고보조사업 중 여권발급, 병무행정등 142개 주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시행령상에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공단지조성, 지방문예회관건립등 15개 사업은 사업별로 일정액을 보조하는 정액보조사업으로 지정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 문화의 집 조성 등 205개 기타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편성시 그 보조율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고보조율의 재조정이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들 국고보조율의 적정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고, 보조율의 대폭적인 인하가 시도되고 있으며, 보조율의 법정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이다. 보조율의 적정성 문제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규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수행케 하려

면 그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보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사무적인 성격이 일부 있으나 중앙정부시책으로 해당사무를 권장 수행케 하는 경우라면 지방사무적 성격의 정도와 시책권장의 강도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정율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으며 순수한 국가위임사업의 보조율은 100%, 국가시책이 우선되는 사업은 70~80%, 국가이해 우선사업의 보조율은 40~50%, 지방이해 우선사업의 보조율은 15~30%로 정해지고 있다.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성격규명과 적정보조율 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그 적정성을 재심의하고 판정하는 기능은 관련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와 실제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측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구에게 맡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와같은 기구로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운영된 실적이 없으며 보조율 결정이나 재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측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위원회에서 직접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업의 성격과 재원분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동 위원회에서 관련부처와 자치단체측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사무의 성격규명과 적정기준율, 재원분담체계를 최종 결정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기존 보조율의 인하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2002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공적자금 이자, 건강보험의료 보조, 의무교육 확대, 기초생활 보장등 중앙정부의 신규예산수요가 급증하는데 따라 이들에 대한 재원 마련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고보조율을 법령으로 정해 두는 이유는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지방비부담분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 재정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예산편성시에 그 해의 일시적인 재원부족 상황에 따라 갑자기 일률적으로 인하된다는 것은 그와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원만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기준보조율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그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충분한 연구·검토를 한 후에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에 차질이 없게 적절한 예고와 점진적 실시과정을 통해 그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준보조율의 법정율을 상한제로 변경하여 예산편성시의 중앙재정 상황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신축적으로 하향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변경안이 제기되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 안은 현재의 기준보조율 법정 취지를 근원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개악안이며 기준보조율의 일시적 인

하조치를 정당화하고 제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안이 제도화되어 매년 사업별 보조율을 중앙부처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적정기준율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매년 되풀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에 대한 예속성이 심화될 것이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이 손상받게 되고, 지방재정의 부담증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틀림없다. 기준보조율 법정제를 규정한 현행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현재 기획예산처가 매년 예산편성시 기준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205개 기타사업에 대하여도 그중 주요사업 순으로 점차 정율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현행 법취지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도라 할 수 있다.

4) 차등보조율제도의 활성화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극심한 재정여건의 격차를 감안하여 재정력이 열악한 단체는 국고보조율을 일정비율 높이고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체에는 보조율을 일정비율 낮게 책정 교부하는 차등보조율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 본격적 실시가 보류되어 왔으며 최근에 이 차등보조율 제도자체를 폐지할 것인지 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차등보조율 제도의 폐지 또는 적용범위 축소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행 사업별 관리방식에 자치단체별 관리방식이 가미되어야 하는 복잡함과 차등보조율 적용실시에 대한 일부 재정력 우수 자치단체의 소극적 입장 내지는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제도의 적극적 도입 실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극심한 수평적 재정력격차를 감안할 때 일률적인 보조율을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 압박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단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그들의 자체투자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포기사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단체간·지역간 경제개발격차와 재정력격차를 심화시키게 되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간 평형화 기능을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양여금제도 및 국고보조사업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중 지방교부세제도와 지방양여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보전하는 역할 못지 않게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평형화를 그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국고보조사업이 이들 제도의 평형화 효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역작용할 수 있게 방치할 수는 없으며 이들 관련 지방재정조정제도와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차등보조율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차등보조율제도의 활성화방안으로는 일부 파급효과가 높은 대표적 국고보조사업을 선정하여 2002년 예산편성시부터 현행 법령에 이미 그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차

등보조율을 반영 실시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는 전국 자치단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단체위임 성격이 강한 국고보조사업을 선정하여 사전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조율 차등화의 근거는 현행 법 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가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로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 재정력지수를 근거기준으로 하는 안이 마련되고 있다. 재정력지수는 지방교부세제도에서 산정되는 당해 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을 그 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대비한 비율이며 이 비율을 근거기준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는 3등급, 기초자치단체는 5등급으로 구분하여 재정력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체는 등급별로 일정수준의 인하보조율을, 그리고 재정력지수가 낮은 단체에는 인상보조율을 적용하게 된다. 현행 법령에 이미 그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이 제도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 전체의 평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차등인상율 및 차등인하율의 규모나 재조정 그리고 차등보조율의 구체적 적용절차 등에 대한 부처간 또는 중앙과 지방간 이견이 있을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5) 국고보조금제도의 사전·사후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자면 국고보조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이 아무리 높다 해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실시와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의 의사와 판단 그리고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001년도의 국고보조사업 362개사업의 총재원은 16조 7,848억원으로 중앙정부는 그중 62%인 10조 3,494억원을 보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33%인 5조 5,234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특히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추진 및 그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인력이나 지방고유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압박하여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음에도 실제로 수행할 지방비 부담을 자체재원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경우만 해도 2000년도의 경우 총 지방비부담 계획액의 21%인 1조 78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지방채 발행으로 감당한 경우는 6,559억원, 채무부담행위가 2,980억원, 미부담이 1,24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행 국고보조비 신청제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등을 검토하고 재정여건의 범위내에서 지방비 부담가능액을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자체 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정부로부터 책정되어 하향식으로 시달되는 국고보조사업을 무리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아직은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도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치단체의 부담능력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며 결과적으로 지방비 부담분 미확보로 인하여 보조금이 반납되거나 보조사업이 이월되는 등의 사례도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행 신청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측의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좀 더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청제도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통합적인 신청제도가 정착되도록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자체적 기준에 의거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비 부담계획에 대한 중기적 재정계획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 검증절차를 거쳐 국고보조 신청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제도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 차원의 사전 및 사후적 검증체계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는 보조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비용편익분석 등 적절한 평가기법에 따라 실시하고 필요하면 사업성격에 따라 일몰제를 도입하며, 국고보조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예시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후적 검증체계의 강화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사업효과에 대한 자치단체측의 평가가 적절히 환류되어 보조사업계획에 반영되는 피드 백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정기적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추진 경과와 문제점, 개선점, 계속 타당성 등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절차가 보완되어야 한다.

4. 결 론

국고보조사업 문제가 최근에 새삼스럽게 쟁점화된 것은 2000년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되어 중앙재정의 지방이전 규모는 확대된 반면에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주요개혁사업의 추진에 따라 중앙재정의 부담은 증대되고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중앙재정 부담축소방안의 일환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의 인하 등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쟁점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원칙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총규모 배분문제는 지방자치의 향방에 대한 기본인식과 현재의 지방재정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등 지방재정에 대한 기본골격의 재검토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지방재원이 국고보조율 인하로 인한 이전재원의 실질적 감소를 감당할 만한 수

준인지,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지방차원의 각종 개혁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의 증폭이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재원확대를 능가하고 있다는 지방측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 복잡한 문제들도 함께 검증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지방재정의 기본여건과 관련된 검증은 생략하고 국고보조금제도의 제도내부적인 개혁과제를 주된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국고보조금제도 자체의 개혁과제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 제안된 개혁과제는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재규명을 통해 상당수 보조사업을 지방고유사업으로 이양하면서 관련 보조액을 지방으로 추가이전하는 과제,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영세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일부사업을 통폐합하고 포괄화하는 개혁과제, 현행 국고보조율을 인하하려는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부 보조율의 재조정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 차등보조율의 적극적 도입과 활성화를 독려하는 개혁방향, 실질적인 신청주의의 정착화를 포함하는 국고보조금제도의 사전 및 사후 관리체제의 개혁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이들 과제의 개혁을 추진할 때 지켜져야 하는 기본원칙으로는 첫째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이 되어야 하고, 둘째로 지방재정 운영이 효율화되는 방향의 개혁이 되어야 하며, 셋째로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제도 등 기타 지방재정조정제도와의 일관성 내지는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넷째로 국고보조사업의 사전·사후 관리제도 등 구체적인 절차의 합리화가 제고되는 방향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제도개혁이 중앙정부측과 지방자치단체측의 상호협의를 통하지 않고는 원만하게 추진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기존 법령에 규정되었으면서도 지금까지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모든 주요 개혁과제는 일단 중앙정부측과 지방자치단체측이 함께 참여하는 동 심의위원회에서 그 구체적 개혁방안이 협의·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박 종구,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중앙·지방정부간관계 및 재원조정」, 한국개발연구원, 1996.

이 계식, "국고보조금제도의 효율적 개편방향",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90.

전 상경, "국고보조배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제23권, 제2호, 198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1991.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Characteristics of Federal Grant-in-Aid Programmes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Grants Funded FY 1995*, June, 1995.

Ahmad, Ehtisham, (ed.), Financing Decentralized Expenditures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rants*, Edward Elgar, 1997.

Gramlich, Edward M., *Financing Federal Systems*, Edward Elgar, 1997.

King, D.A., (ed.), *Local Government Economics in Theory and Practice*, London : Routledge, 1992.

Pola, G., France, G., and Levaggi, R., *Developments in Local Public Finance : Theory and Practice,* Edward and Elgar : 1996.

Shah, A. R., *The Reform of Inter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Developing and Emerging Market Economies*, Washingtpon, D.C.: The World Bank, 1994.